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 변경 등 〉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7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 ..	2
2.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중지 가능 신설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6. 25.

다. 회부연월일 : 2025.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경유하여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중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불법채권추심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에 이용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3 신설 및 제32조의3).

Ⅲ. 검토의견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경유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요청 증가로 인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에 이용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3 신설 및 제32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의2. (생략) <u><신설></u> 13. ~ 17. (생략)	제2조(정의) ----- -----. 1. ~ 12의2. (현행과 같음) 12의3. “ <u>사회관계망서비스</u> ”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13. ~ 17.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

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u>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u>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한) ① ----- -<u>수사기관의</u>----- ----- ----- ----- -----<u>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u> 및 해당 이용자의 <u>사회관계망서비스에</u>----- -----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검토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²⁾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등에 해당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안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 변경 부분(안
제32조의3제1항)은 실제 불법 대부광고, 보이스피싱 등의 수사
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행정기관인 경찰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단순화하여 신속한 불
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방지를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
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 대부광고, 보이스피싱, 마약류 등 불
법사행행위 등 불법정보가 무분별하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
다는 지적이 언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행정기관인 경찰청에 수사기관에서의 최근 중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 개정안을
통한 신속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이 필요하다는 입
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요청 권한의
유지 필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동 개정안은 기존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은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 권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법률 규정을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제1항3)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나 대통령령⁴⁾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역무 제공 요청 권한 대상이 수사기관에 한정되게 되므로,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 등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권한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음.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도지사
2. 검찰총장
3. 경찰청장
4.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

<헌행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이용 중지 요청의 관계 기관>

이용중지 요청 및 명령 관련 법령	불법행위 유형	관계 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	불법 대부광고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불법광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이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	타인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이용	수사기관의 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7.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법률 개정으로 차단 대상이 “불법대부광고”에서 “불법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금융사기 수범도 다양해지고 있어, 이용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면 경찰이 즉시 차단을 요청해 추가 범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 이외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등에서도 이용중지 요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요청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요청주체를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개정안에서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불법행위의 유형과 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의 소관 기관이 불법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체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인 경찰청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동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중지 요청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경찰 이외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등에서도 이용중지 요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요청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지 명령 요청 주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정할 경우, 개정안 본문과 각 호의 내용 간에 법체계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정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안 제2조12의3 신설 부분에 대해 부가통신역무의 범위가 넓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므로 범위의 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거치지 않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직접 전기통신역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신속히 차단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있으나,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요청 권한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2.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중지 가능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최근 전화 방식 이외에도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채권 추심 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같은 SNS를 활용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 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중지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관계 행정기관의 장</u> 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u>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u> 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 - <u>수사기관의</u> ----- ----- ----- ----- ----- <u>전기통신번호</u> (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 및 해당 <u>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u> ----- ----- -----.

□ 검토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불법 대부 광고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역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전기통신번호로 한정되어 있음.
- 최근 SNS를 통한 불법 추심이 증가하는 추세⁶⁾이며, SNS를 활용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협박 등의 불법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동 개정안을 통해서 전화번호 이외에도 불법 추심에 이용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해서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 차단 of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함.
 - 불법 추심의 수단이 전화에서 SNS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화번호 기반 차단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동 개정안을 통해 SNS 계정을 이용한 협박·공포 유발 등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중단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⁷⁾의 내용이 전기통신번호의 중단에 대한 내

5)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6) TV 조선, “‘빛 갇히라’ 선 넘은 SNS 독촉…불법 사채업자 카카오톡 이용 막는다, 2025. 6. 15. ’,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6/15/2025061590166.html?utm_source=chatgpt.com

용을 담고 있어, 본문과 각 호의 내용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면, 해당 조항 제1호에 명시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제1항8)에 따르면, 불법 대부행위(추심 포함)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제도가 명시되어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⁹⁾도 동일하게 전화번호

-
- 7)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생략)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의 확인·신고,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불법 추심에 활용된 SNS 서비스의 중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과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도 각 호에 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여러 법률의 규제 내용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에 사용된 기간통신서비스의 제한을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의 중지는 인터넷상 불법정보 유통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제한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지 명령 대상’을 기존의 ‘전기통신번호’에서 ‘전기통신번호 및 해당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확장하는 경우, 개정안 본문과 각 호의 내용 간에 법체계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정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행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¹⁰⁾ 부분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의 근거 규정이고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요청의 근거 규정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인용하는 등의 직접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종합적으로 보면, SNS를 통한 불법 추심이 증가함에 따라, 동 개정안은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도 중지 대상으로 포함해 불법 행위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타당하나, 본문과 각 호의 내용이 전화번호를 위주로 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로 되어 있어 동 개정안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소관 부처의 인터넷상 불법정보 유통의 결과로 인한 SNS 정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항이라는 의견 등을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임.

문 의 처

02)6788-5225

10)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